제100회 정기총회시 개정통과된 헌장개정안 및 정관(규정)개정안

제100회 정기총회시 개정통과된 헌장개정안 및 정관(규정)개정안(제98회 총회 발의안) 공고

분류번호 조 / 항	현 행	헌장개정통과안	비고
98-2-1 제53조 목사 ③항	③ 자격 [본 교회]의 [지방회]에서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고 나이 만 28세 이상 된 이로서 아래 1, 2, 3, 4, 5, 6, 7, 8, 9호 중 하나와 10호에 해당하는 이에 한하여 목사안수 청원 대상자 자격을 준다(단,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무경력이 인정된다). 10. 위 1호-8호에 해당하는 이들 모두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가. [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] 또는 「성결교신대원」 3년 과정을 졸업한 이. 나. 매년 시행하는 목사후보자학력고시의 전 과정을 합격한 이. 다. 신앙체험이 명백하고 부지런하여 구령열이 있고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혼사실이 없는 이(단,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한다).	③ 자격 [본 교회]의 [지방회]에서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고 나이 만 28세 이상 된 이로서 아래 1, 2, 3, 4, 5, 6, 7, 8, 9호 중 하나와 10호에 해당하는 이에 한하여 목사안수 청원 대상자 자격을 준다(단,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무경력이 인정된다). 10. 위 1호-6호, 8호에 해당하는 이들 모두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가. [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] 또는 [성결교신대원] 3년 과정을 졸업한 이. 나. 매년 시행하는 목사후보자학력고시의 전 과정을 합격한 이. 다. 신앙체험이 명백하고 부지런하여 구령열이 있고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혼사실이 없는 이(단,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한다). **11. 군종장교(요원)는 국방부의 요청이 있을 때 군경선교부의 결의로 목사 중에서 총회 임원회가 추천한다.**	
98-2-2 제53조 목사 ⑦항	⑦ 목사의 구분 1. 담임목사 목사로서 [지 교회]의 목사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. 마. [지방회]의 정회원이 된다. (담임목사 또는 치리목사 없이, 또는 위임이나 허락 없이 교회 안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며 혹 회의를 열어 무슨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무효이다.)	⑦ 목사의 구분 1. 담임목사 목사로서 [지 교회]의 목사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. 마. [지방회]의 정회원이 된다. **바. 담임목사 또는 치리목사 없이, 또는 위임이나 허락 없이 교회 안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며 혹 회의를 열어 무슨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무효이다.**	
98-2-4 제53조 목사 ⑦항	8. 원로목사 가. [본 교회』에서 목회경력 30년 이상 되고 [지 교회]에서 20년 이상 근속시무하고 나이 만 65세 이상 되어 은퇴한 목사는 시무교회가 원로목사 추대허락을 청원하고 [지방회]의 추천과 [총회]의 원로목사 추대허락을 받아 [지방회] 주관으로 원로목사 추대예식을 거행함으로 원로목사가 된다.	8. 원로목사 가. [본 교회]에서 목회경력 30년 이상 되고 [지 교회]에서 20년 이상 근속시무하고 나이 만 65세 이상 되어 은퇴**하는** 목사는 시무교회가 원로목사 추대허락을 청원하고 [지방회]의 추천과 [총회]의 원로목사 추대허락을 받아 [지방회] 주관으로 원로목사 추대예식을 거행함으로 원로목사가 된다.	

98-3-1 제54조 전도사(전도 인) 의 전임 ①항	① 같은 [지방회] 안에서의 전임 다른 [지 교회]에 속한 전도사(전도인)의 청빙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. 3. [감찰회]는 전도사 청빙허락 여부를 결의하여 [전도사 청빙원서 처리결과 통지서]를 [지 교회]에 보내고 [지방회] 서기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	① 같은 [지방회] 안에서의 전임 다른 [지 교회]에 속한 전도사(전도인)의 청빙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. 3.『감찰회]는 전도사 청빙허락 여부를 결의하여 **전도사 청빙 허락을 확인한 [전도사 청빙 허락 청원서] 원본은 보관하고, 복사본은 [전도사 청빙 허락 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서]와 함께 청빙허락을 청원한 [지 교회]에 보내고 [지방회] 서기에게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.**	
98-4-1 제55조 목사의 전임 ①항	① 같은 [지방회] 안에서의 전임 다른 [지 교회] 목사의 청빙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. 1.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의 전임 라. 지방회장은 허락여부를 [지교회]에 통보하고 [지 교회]는 [지방회]의 허락에 따라 [지방회] 주관으로 위임예식을 거행하여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한다.	① 같은 [지방회] 안에서의 전임 다른 [지 교회] 목사의 청빙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. 1.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의 전임 라. 지방회장은 허락여부를 [지교회]에 **통보하되 청빙허락을 확인한 [담임목사 청빙허락 청원서] 원본은 보관하고, 복사본은 [담임목사 청빙허락 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서]와 함께 청빙허락을 청원한 [지 교회]에 보내고** [지 교회]는 [지방회]의 허락에 따라 [지방회] 주관으로 위임예식을 거행하여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한다.	
98-4-2 제55조 목사의 전임 ②항	② 다른 [지방회]로의 전임 다른 [지방회]의 목사의 청빙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 1.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전임할 때 다. 청빙받는 이의 소속 [지방회]는 [담임목사 청빙허락 청원서]를 확인하여 [지 교회]에 보내고 이명증서를 발급한다.	② 다른 [지방회]로의 전임 다른 [지방회]의 목사의 청빙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 1.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전임할 때 다. 청빙받는 이의 소속 [지방회]는 **청빙허락을 확인한 [담임목사 청빙허락 청원서] 원본은 보관하고, 복사본은 [담임목사 청빙허락 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서]와 함께 청빙허락을 청원한 [지 교회]가 소속한 [지방회]에** 보내고 이명증서를 발급한다.	
98-5-1 제60조 조직	[직원회]는 목사, 전도사, 장로,권사, 안수집사, 집사, 권찰로 조직한다.	[직원회]는 **시무하고 있는 직원(목사, 전도사, 장로, 권사, 안수집사, 집사, 권찰)**으로 조직한다.	
98-8-2 제74조 지방회 조직방법 ①항	① [지방회] 내의 [지 교회] 목사대표와 장로대표와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와 총회본부 총무 및 성결대학교 총장과 그 [지방회]에 소속된 군목대표(대위 이상) 및 군선교 목사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.	① [지방회] 내의 [지 교회] 목사대표와 장로대표와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와 총회본부 총무 및 성결대학교 총장과 그 [지방회]에 소속된 군목대표 (대위 이상) 및 군선교 목사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. **(단,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제92조 ②항에 근거하여 아래 ②항을 기준한다.)**	
98-8-3 제74조	②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여야 한다(원로목사와 원로장로도 동수로 한다).	②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여야 한다(원로목사와 원로장로**는 지방회 기준의 동수**	

지방회조직방법 ②항		**로 한다).**	
98-10-6 제78조 권한과 사무 ⑮항	⑮ [지방회]는 아래의 표준에 따라 신설교회를 승인한다. 2. 집회장소로 33㎡(10평) 이상의 예배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 6. 기존교회의 이전, 가입 시에도 ⑮항 4호를 적용한다.	⑮ [지방회]는 아래의 표준에 따라 신설교회를 승인한다. 2. 집회장소로 33㎡(10평) 이상의 예배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 6. 기존교회의 이전, 가입 시에도 **⑮항 2호, 4호를 적용한다.**	
98-12-2 제94조 총회 권한과 사무 ⑧항	⑧ [총회]는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한다. 1.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에게 전도사 자격을 부여한다. 마. 없 음 2.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도사에게 목사안수 청원대상자격을 부여한다. 가.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과 성결교신대원 3년 과정을 졸업한 이. 나. 총회가 매년 실시하는 목사학력고시 전 과목에 합격격한 이. 3. 없 음	⑧ [총회]는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한다. 1.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에게 전도사 자격을 부여한다. **마. 교역과목은 12과목이며 아래와 같다. (헌장, 조직신학, 사중복음, 성결교회사, 웨슬레신학, 구약개론, 신약개론, 기초히브리어, 기초헬라어, 설교학, 기독교교육학, 실천신학)** 2.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도사에게 목사안수 청원대상자격을 부여한다. 가. [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] 또는 [성결교신대원] 3년 과정을 졸업한 이. 나. 총회가 매년 실시하는 목사학력고시 전 과목에 합격격한 이. **3. 군목(군종사관 후보생)은 헌장 제53조 ③항 7호에 따른다.**	
98-12-3 제94조 총회 권한과 사무 ⑪항	⑪ [총회]는 산하 기관 중 교육기관(성결교신대원, 총회성결교신학교)의 경영은 해당 기관의 정관(규정)에 따르되 [총회]의 인준을 받게 한다. 3. 취임과 임기 가. 이사장은 [총회]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. 다. 없 음	⑪ [총회]는 산하 기관 중 교육기관(성결교신대원, 총회성결교신학교)의 경영은 해당 기관의 정관(규정)에 따르되 [총회]의 인준을 받게 한다. 3. 취임과 임기 가. **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의 추천과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.** **다. 원장, 학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의 추천과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.**	
98-12-4 제94조 총회 권한	⑬ [총회]는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(이하 [유지재단]이라 한다)을 두어 [지교회]의 모든 부동산과 각 기관의 부	⑬ [총회]는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(이하 [유지재단]이라 한다)을 두어 [지교회]의 모든 부동산과 각 기관의 부	

과 사무 ⑬항	동산을 보존하게 한다. 3. 취임과 임기 가. 이사장은 [총회]의 인준과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.	동산을 보존하게 한다. 3. 취임과 임기 가. **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의 추천과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.**	
98-12-5 제94조 총회 권한과 사무 ⑭항	⑭ [총회]는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(이하 [은급재단]이라 한다)을 두어 교역자의 은급 및 후생을 지원한다. 3. 취임과 임기 가. 이사장은 [총회]의 인준과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.	⑭ [총회]는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(이하 [은급재단]이라 한다)을 두어 교역자의 은급 및 후생을 지원한다. 3. 취임과 임기 **가.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의 추천과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.**	
98-12-7 제94조 총회 권한과 사무 ⑱항	⑱ [총회]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하 모든 기관의 이사(이사장 포함)와 감사에 대한 인준 및 파송을 하며 아래 ㉔항에 의거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.	⑱ [총회]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하 모든 기관의 이사(이사장 포함)와 감사에 대한 인준 및 파송을 하며 아래 ㉔항에 의거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. **단, 성결신학원의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, ②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.**	
98-12-8 제94조 총회 권한과 사무 ㉒항	㉒ [총회]는 산하 모든 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파송 및 집행부서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의 선임은 [정기총회]의 위임을 받아 임원회에서 인선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. 1. [총회] 산하 각 기관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총회가 인준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직의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파송요청이 없을 시 총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(단, 주무관청의 법과 상충될 시 헌장을 우선 적용하며 주무관청의 남은 임기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).	㉒ [총회]는 **회기 중에 임기만료 되는** 산하 모든 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파송 및 집행부서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의 선임**(결원시의 보선 포함)**은 [정기총회]의 위임을 받아 임원회에서 인선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. 1. [총회] 산하 각 기관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총회가 인준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직의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파송요청이 없을 시 총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(단, 주무관청의 법과 상충될 시 헌장을 우선 적용하며 주무관청의 남은 임기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).	
98-12-9 제94조 총회 권한과 사무	㉔ [총회]는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(이사장 포함) 및 감사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을 소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.	㉔ [총회]는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(이사장 포함) 및 감사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을 소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.	

㉔항	1. 소환 사유 가. 총회의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. 나. 총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을 저촉하였을 때. 다. 없 음	1. 소환 사유 가. 총회의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. 나. 총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을 저촉하였을 때. **다. 총회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(이사장 포함)가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 중 현저한 과실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.**	
98-14-1 제97조 부서 ②항	② 집행부서 교직자로 구성한다. 1. 목사고시위원회 라. 없 음 9. 다문화선교위원회 가. 사회복지부 산하에 둔다.	② 집행부서 교직자로 구성한다. 1. 목사고시위원회 **라.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.** 9. 다문화선교위원회 가. **선교부** 산하에 둔다.	
98-15-1 제98조 실 행 위 원 회 ③항	③ 임무 2. [정기총회] 폐회 후 제94조에 의거하여 회기 중에 임기만료 및 결원이 생긴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(이사장 포함), 감사, 위원 선출에 대해 심의하여 인준한다. 3. [총회]에서 소환된 이에 대하여 제94조 ㉔항에 의거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, 소환된 이는 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고, 해임결의에 순응하지 않는 이에 대하여 [총회재판위원회]에 회부한다.	③ 임무 2. [정기총회] 폐회 후 제94조 **㉒항에** 의거하여 회기 중에 임기만료 및 결원이 생긴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(이사장 포함), 감사, 위원 선출에 대해 심의하여 인준한다. 3. [총회]에서 소환된 이에 대하여 제94조 ㉔항에 의거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, 소환된 이는 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고, 해임결의에 순응하지 않는 이에 대하여 [총회재판위원회]에 회부한다.	
98-16-1 제99조 총 회 본 부 ③항	③ 1실(총무실)과 6국(사무국, 전도국, 선교국, 교육국, 평신도국, 사회복지국)과 1소(성결상담소)를 두어 업무를 분담한다. 4. 선교국 가. 선교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. 나. 선교국은 본 교회의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해외선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	③ 1실(총무실)과 6국(사무국, 전도국, 선교국, 교육국, 평신도국, 사회복지국)과 1소(성결상담소)를 두어 업무를 분담한다. 4. 선교국 가. 선교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. 나. 선교국은 본 교회의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해외선교와 **다문화선교에**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	
98-18-1 제113조 재판절차 ③항	재판절차는 다음의 순으로 규정한다. ③ 제106조 ⑭항에 해당된 경우는 총회재판위원회가 단심으로 판결한다.	재판절차는 다음의 순으로 규정한다. ③ 제106조 **⑬항, ⑭항에 해당된 경우는 총회재판위원회가 단심으로 판결한다.**	
98-20-1 제121조 판결 ⑧항	⑧ 없 음	**⑧ 이 헌장에 의한 모든 판결의 적용은 사회법의 판결보다 우선한다.**	

100회 정기총회시 개정통과된 헌장개정안 및 정관(규정)개정안(제99회 총회 발의안) 공고

분류번호 조 / 항	현 행	헌장개정통과안	비고
제99-5 제52조 자격의 1항 가목.	성결대학교 신학부, 총회성결교신학교를 졸업한 이와 성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수료하고 교역과목을 이수한 이.	성결대학교 신학부, 총회성결교신학교를 졸업한 이와 성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수료하고 교역과목을 이수한 이. **(단, 교역과목은 총회가 정한 과목에 한한다.)**	
제99-6-1 제53조 ① 직임의 5호.	목사는 중대하고도 신성한 직분이므로 성직이외의 직업을 겸할 수 없다.	목사는 중대하고도 신성한 직분이므로 성직**을 충성되이 수행해야 한다. (단, 성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직 이외의 직업을 겸할 수 있다)**	
제99-10-1 제78조 권한과 사무 ④항 1호 가목(3) 및 2호 가목(3)	④항 1호 가목(3)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 지교회에서 그 직에 3년이상 시무하고 소속 지방회에서 3년 이상 경과(단 행정구역에 따라 교회와 함께 전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)된 이 ④항 2호 가목(3)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 지교회에서 그 직에 3년이상 시무하고 소속 지방회에서 3년 이상 경과(단 행정구역에 따라 교회와 함께 전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)된 이	④항 1호 가목(3)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**서 지교회에서 그 직에 3년 이상 시무하고** 소속 지방회에서 3년 이상 경과**(지방회내 지교회에서 임지를 이동 및 신설일 때 그 직에 시무한 경우와** 행정구역에 따라 교회와 함께 전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)된 이 ④항 2호 가목(3)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**서 지교회에서 그 직에 3년 이상 시무하고** 소속 지방회에서 3년 이상 경과**(지방회내 지교회에서 임지를 이동 및 신설일 때 그 직에 시무한 경우와** 행정구역에 따라 교회와 함께 전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)된 이	
제99-11 제79조 임원선거 및 임기(지방회)	제79조 임원선거 및 임기 ②자격 1. 회장, 부회장은 본 교회에서 목사는 15년, 장로는 7년 이상 시무한 이 2. 위의 1호 외의 임원은 본 교회에서 목사는 10년, 장로는 5년 이상 시무한 이	제79조 임원선거 및 임기 ②자격 1. 회장, 부회장은 본 교회에서 목사는 15년, 장로는 **5년** 이상 시무한 이 2. 위의 1호 외의 임원은 본 교회에서 목사는 10년, 시무장로는 5년 이상 시무한 이	
제99-12-2 제94조 총회 권한과 사무 ㉖항	㉖ [총회]는 산하 협력기관(원로•명예목사회, 원로장로회, 장로회전국연합회, 예성부흥사회, 군종목사단, 교역자사모회, 예성목회자스포츠문화선교단, 성락원, 성결사, 영암김응조목사기념사업회)의 온갖 일에 대한 보고를 명하며, 감독의 권한을 행사한다.	㉖ [총회]는 산하 협력기관(원로·명예목사회, 원로장로회, 장로회전국연합회, 예성부흥사회, 군종사단, 교역자사모회, 예성목회자스포츠문화선교단, 성락원, 성결사, 영암김응조목사기념사업회, **증경총회장회, 증경장로부총회장회, 여목회자회 등**)의 온갖 일에 대한 보고를 명하며, 감독의 권한을 행사한다.	
제99-15 제99조	2. 사무국 가. 사무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.	2. 사무국 가. 사무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.	

총회본부 ③항 2호 다목(신설)	나. 사무국은 본 교회의 경리업무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 사항 각 지방회와 업무 연락, 그리고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집행한다.	나. 사무국은 본 교회의 경리업무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 사항 각 지방회와 업무 연락, 그리고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집행한다. **다. 홍보실을 두어 총회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.**	
제99-21 제128조 헌장개정의 의결 및 공포	① 총회에 상정된 헌장개정안의 의결은 파송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발언을 각 1명씩 3분 이내로 허락할 수 있으며 축조 심의할 수 없다.	① 총회에 상정된 헌장개정안의 의결은 파송 대의원 **3분의 2 이상의 출석과**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발언을 각 1명씩 3분 이내로 허락할 수 있으며 축조 심의할 수 없다.	

제99-23 [총회본부 운영규정 제16조 사무국장]

분류번호 조 / 항	현 행	헌장개정통과안	비고
제99-23 제16조 (사무국장) ⑭항 신설	제16조 (사무국장) 사무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2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. ① 문서 수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②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③ 인사기록카드(교역자, 장로, 직원) 정리 및 보관업무에 관한 사항 ④ 각종 회의(총회, 실행위원회, 임원회, 각 부서, 항존 위원회)에 관한 사항 ⑤ 제반 행사 준비 및 사 무실 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 ⑥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반 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 ⑧ 다른 교단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⑨ 총회유지비 수납에 관한 사항 ⑩ 각국의 금전 출납 및 현금에 관한 사항 ⑪ 총회의 예산집행에 관한 경리사무에 관한 사항 ⑫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⑬ 경조사를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총회본부의 직원 정원은 아래와 같다.	제16조 (사무국장) 사무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2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. ① 문서 수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②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③ 인사기록카드(교역자, 장로, 직원) 정리 및 보관업무에 관한 사항 ④ 각종 회의(총회, 실행위원회, 임원회, 각 부서, 항존 위원회)에 관한 사항 ⑤ 제반 행사 준비 및 사무실 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 ⑥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반 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 ⑧ 다른 교단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⑨ 총회유지비 수납에 관한 사항 ⑩ 각국의 금전 출납 및 현금에 관한 사항 ⑪ 총회의 예산집행에 관한 경리사무에 관한 사항 ⑫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⑬ 경조사를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**⑭ 총회홍보에 관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** 총회본부의 직원 정원은 아래와 같다.	

<table>
<tr>
<td>제25조
(직원의
정원)</td>
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국장·소장</th><th>실장</th><th>간사</th><th>사무원</th><th>고용원</th><th>계</th></tr>
<tr><td>총무실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2</td></tr>
<tr><td>사무국</td><td>1</td><td>1</td><td>1</td><td>3</td><td>2</td><td>8</td></tr>
<tr><td>전도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3</td></tr>
<tr><td>선교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3</td></tr>
<tr><td>교육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2</td><td>1</td><td></td><td>4</td></tr>
<tr><td>평신도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3</td></tr>
<tr><td>사회복지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3</td></tr>
<tr><td>성결상담소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2</td></tr>
<tr><td>계</td><td>7</td><td>3</td><td>7</td><td>9</td><td>2</td><td>28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국장·소장</th><th>실장</th><th>간사</th><th>사무원</th><th>고용원</th><th>계</th></tr>
<tr><td>총무실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</td><td>2</td></tr>
<tr><td>사무국</td><td>1</td><td>2</td><td>1</td><td>3</td><td>2</td><td>9</td></tr>
<tr><td>전도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3</td></tr>
<tr><td>선교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3</td></tr>
<tr><td>교육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2</td><td>1</td><td></td><td>4</td></tr>
<tr><td>평신도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3</td></tr>
<tr><td>사회복지국</td><td>1</td><td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3</td></tr>
<tr><td>성결상담소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2</td></tr>
<tr><td>계</td><td>7</td><td>4</td><td>7</td><td>9</td><td>2</td><td>29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제33조
(보 수 지
급일)</td>
<td>제33조 (보수지급일)
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고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</td>
<td>제33조 (보수지급일)
보수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부칙
제1조
(개정)</td>
<td>제1조 (개정)
①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한다.
②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3년 5월 27일 개정한다.
③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6년 5월 11일 개정한다.
④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7년 5월 24일 개정한다.</td>
<td>제1조 (개정)
①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한다.
②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3년 5월 27일 개정한다.
③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6년 5월 11일 개정한다.
④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7년 5월 24일 개정한다.
⑤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21년 5월 10일 개정한다.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제2조
(시행일)</td>
<td>제2조 (시행일)
① 이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이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③ 이 규정은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④ 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td>
<td>제2조 (시행일)
① 이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이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③ 이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④ 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td>
<td></td>
</tr>
</table>

제99-24 [유지재단 정관 제4조 (사업)]

분류번호 조 / 항	현 행	헌장개정통과안	비고
제99-24 제4조 (사업) ⑪신설	제4조 (사업)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.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교육사업 및 보육사업 ③ 구호사업 ④ 사회사업 ⑤ 탁아사업 ⑥ 양로사업 ⑦ 교역자 공제사업 ⑧ 출판사업 ⑨ 임대사업 ⑩ 기타 부대사업	제4조 (사업)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.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교육사업 및 보육사업 ③ 구호사업 ④ 사회사업 ⑤ 탁아사업 ⑥ 양로사업 ⑦ 교역자 공제사업 ⑧ 출판사업 ⑨ 임대사업 ⑩ 기타 부대사업 **⑪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**	